

—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10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0월 31일

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個이상의 洞에 걸쳐지게 됨에 따라
-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 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도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행정구역(행정동 및 법정동)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정
 - 도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량동 일부 7필지 3.731km² ⇒ 봉곡동
 - 도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봉곡동 일부 21필지 27.157km² ⇒ 도량동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
-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내지 제11조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4. 토 론 요 지 : 생 략

5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찬성 의견서 채택(별지)

-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-

심 사 의 건 서

- 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個이상의 洞에 걸쳐지게 됨에 따라,
-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 코자 하는 도량2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은 의견제시안대로 추진 토록 할 것.

【주요내용】

- 도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행정구역(행정동 및 법정동)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정
 - 도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량동 일부 7필지 3.731km² ⇒ 봉곡동
 - 도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봉곡동 일부 21필지 27.157km² ⇒ 도량동